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과 설치 일반요건인 정원(업무량) 기준 미준수

기관명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강진군, 진도군, 신안군

내용

과(課)는 보조기관의 최소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라고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 정원을 12명 미만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량과 통솔범위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조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정원이 12명 미만 부서(課) 운영 현황 >

지자체명	부서명	정원	현원	비고
순천시	자치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5급)	8	9	
나주시	대외협력사무소(5급)	5	3	
광양시	산단복지센터 산단과(5급)	10	10	
강진군	개발사업지원단(5급)	8	7	
진도군	그린에너지사업단(5급)	7	5	
신안군	대광개발사업소(5급)	7	5	
	홍도관리사업소(5급)	7	4	
	가거도관리사업소(5급)	5	3	
	흑산공항지원단(5급)	5	3	
	도시개발사업소(5급)	6	5	
	병풍도관리사무소(5급)	7	5	
	하의건강증진센터(5급)	5	4	
	암태건강증진센터(5급)	5	4	
	홍도건강증진센터(5급)	5	2	
	가거도건강증진센터(5급)	5	2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강진군수, 진도군수,新安군수께서는

정원이 12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과·담당관에 대하여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임시조직(TF) 설치를 통한 간부급 직위 추가 운영 등 부적정 사례

기 관 명 목포시, 해남군, 신안군

내 용

임시조직(TF)은 행정기구로 편제할 만큼의 상시적 업무가 아닌, 단기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으로 단기간 역할 수행 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3에 의하면 시·군·구 소속 4급 공무원은 실·국·본부장에, 5급 공무원은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 목포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사일 현재 임시조직(TF) 설치 이후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 행정기구로 전환하거나 해당 임시조직을 해체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임시조직(TF) 형태로 운영하는 등 조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특히, 목포시와 신안군의 경우 기관 내 과장급 직위를 부여함이 타당한 5급 공무원을 임시조직 단장으로 임용하면서 이에 따른 과장급 결원 직위는 차하급자인 6급 공무원이 직무대리하는 등 조직관리 및 직급 기준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구정원규정 상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따라 조례·규칙에 반영된 5급 공무원 정수 범위 내에서 5급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조례·규칙에도 없는 별도의 과장급 임시조직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에 대한 결원직위를 차하급자(6급)로 하여금 직무대리토록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과장급 직위를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기구폐지·단장 직급 재검토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

< 부적정한 임시조직(TF) 설치·운영 현황 >

지자체명	임시조직(TF) 명	원소속	TF 구성원	TF 설치일 (설치기간)	비고
목포시	전국체전준비 기획단(5급)	-	(3명) 5급 2, 8급 1	'20. 1. (1년 4개월)	과장급 직위(2) 추가 운영
해남군	공모사업TF (6급)	총무과 (5급)	(2명) 6급 1, 8급 1	'20. 1. (1년 4개월)	
신안군	가고싶은섬TF (6급)	문화관광과 (5급)	(3명) 6급 2, 8급 1	'19. 5. (1년 11개월)	
	인구정책TF (5급)	기획홍보실 (4·5급)	(5명) 5급 1, 6급 이하 3, 지도사 1	'19. 8. (1년 8개월)	계서체계 위반, 과장급 직위(1) 추가 운영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 해남군수,新安군수께서는

1년이상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시조직(TF)에 대하여는 기구설치기준에 부합하게 폐지 또는 직제에 반영하여 주시고, 보직 부여 및 직무대리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부적정(4급 기구)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내 용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는 구체적 요건으로서 ①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②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목포시의 '환경수도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은 법령상 설치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업소 설치 부적정 내역 >

지자체명	기구명	부서명	정원	비고
전남 목포	환경수도사업단 (4급)	소계	133	
		환경보호과(5급)		
		자원순환과(5급)		
		환경시설관리과(5급)		
		수도과(5급)		
		하수과(5급)		
	도시발전사업단 (4급)	소계	65	
		도시재생과(5급)		
		도시문화재과(5급)		
		공원녹지과(5급)		

(1) 환경수도사업단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은 최초 설치 당시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상수도 사업소'로 설치되었으나, 이후 '환경관리사업단'과 통합되면서 현재의 '환경수도 사업단'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환경수도사업단'에는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부서는 환경정책, 기후변화, 생활환경 등 환경과 관련한 정책기능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목포시청에는 환경과 관련한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각 부서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는 '시가지 청소차량 운전',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매립장비 굴삭기 운전' 등 집행기능도 일부 있으나,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시책업무 창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등은 정책여건에 대한 분석, 행정수요의 조사, 주민여론의 수렴, 중앙부처-시·도와의 업무조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업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본청에서 폐지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시발전사업단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은 공영개발 관련 관리·보상, 택지개발, 기반시설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한시기구('89.11.16.~'06.12.31.)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사업소로 이관하면서 최초 설치되었다.

도시발전사업단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에서 수행하는 기능 중에는 환경수도사업단과 마찬가지로 일부 집행기능 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총괄', '문화재 지정 및 승격관련 업무', '문화축제 개최', '공원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계획 및 대책 수립' 등 정책기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시재생과'와 '도시문화재과'의 기능이 '공원녹지과'의 기능과 동일한 기관 및 현장에서 추진됨으로써 효율성이 크게 제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인 삼학도 녹지조성, 임성지구 개발 등 일부 조성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공원녹지, 산림, 가로수, 화훼,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 도시재생·문화재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산림·녹지·공원 분야 본연의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부서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관 및 현장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3) 결론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분석 결과, 목포시의 환경수도사업단(4급)과 도시발전사업단(4급)의 설치·운영 실태가 법령상 사업소 설치 요건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환경수도사업단(4급)은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부서(환경보호과·자원순환과)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수도과·하수과)는 남해수질관리사무소(5급) 등 연관성이 높은 타 사업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도시발전사업단(4급)은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도시재생과·도시문화재과·공원녹지과)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해당 사업소를 폐지하고, 일부 현장성이 높은 집행기능(시설물 관리 등)을 수행하는 5·6급 사업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법령상 사업소 설치·운영 규정 준수와 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관리의 건전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목포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께서는

법령상 사업소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사업소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부적정(4급 기구)

기 관 명 전라남도, 여수시

내 용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는 구체적 요건으로서 ①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②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여수시의 '도시시설사업단'은 법령상 설치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업소 설치 부적정 내역 >

지자체명	기구명	부서명	정원	비고
전남 여수	도시시설사업단 (4급)	소계	72	
		도시재생과(5급)		
		공영개발과(5급)		
		도로시설관리과(5급)		
		공원과(5급)		

여수시 도시시설사업단은 최초 설치 당시 도심개발사업과 산단조성개발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업소로 분리되면서 주로 도심정비, 경관조성, 교통시설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점차 본청으로부터 정책기능이 이관되어 조직규모가 확대되었다.

(1) 사업소의 정책기능 수행

그런데 현재 해당 사업소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상당 부분은 본청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책기능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재생사업 지구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총괄', '옥외광고물 전반에 관한 업무 및 처리',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공원조성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은 본청의 부서에서 조직내 정책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서 정책 여건에 대한 분석, 행정수요의 조사, 주민여론의 수렴, 중앙부처-시·도와의 업무 조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시설물 관리 등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도로관리팀, 오동도관리팀 등)도 존재하여 사업소 내 정책기능-집행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시 본청에 '산업지원과', '도시미화과', '산림과', '도로과' 등 부서가 해당 사업소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청 부서와 사업소의 업무분장이 정책기능-집행기능을 기준으로 분장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직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부서간 낮은 연계성·통합성

사업소 부서간 기능적 측면에서 연계성·통합성이 하나의 사업소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지적되었다. 본청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각기 다른 국(기획경제국·관광문화교육국·환경복지국·건설교통국)에 배치되어 있는데, 도시시설사업단 내 4개 부서는 하나의 사업단 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 현장이나 특정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설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 각 부서의 업무·기능 검토 결과 일부 연계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여수시 전반의 행정수요를 대응하고 있어 부득이 통합하여 4급 사업소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발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4급 기구를 별도 설치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보고체계, 통솔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우려가 있으며, 이는 법령상 규정된 사업소의 설치 요건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 론]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분석 결과, 여수시의 4급 사업소장 설치·운영 실태가 법령상 사업소 설치 요건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도시시설사업단(4급)은 정책기능을 본청으로 분리·이관하여 해당 사업소를 폐지하고, 일부 현장성이 높은 집행기능(시설물 관리 등)을 수행하는 5·6급 사업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법령상 사업소 설치·운영 규정 준수와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관리의 건전성을 위하여 여수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여수시장께서는

법령상 사업소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사업소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부적정(4급 기구)

기 관 명 전라남도, 순천시

내 용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는 구체적 요건으로서 ①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②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순천시의 '생태환경센터'는 법령상 설치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업소 설치 부적정 내역 >

지자체명	기구명	부서명	정원	비고
전남 순천	생태환경센터 (4급)	소계	99	
		청소자원과(5급)		
		생태환경과(5급)		
		산림과(5급)		
		공원녹지과(5급)		

순천시 생태환경센터는 최초 설치 당시 평생학습지원, 예술진흥, 여성능력개발 등을 담당하는 사업소로 설치되었으나, 이후 본청에 문화관광국(4급)을 신설하면서 해당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생태환경분야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로 개편되었다. 본래 소속기관 설치시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시·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나, 해당 4급 사업소장은 기존 평생학습 지원 관련 사업소 설치시 이미 도와 협의를 마친 정원으로 간주되어 전라남도는 별도 승인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생학습지원과 생태환경관리는 본질적 기능수행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상이함에 따라, 기존 평생학습지원 관련 사업소는 폐지(본질적 사정변경 발생)되고 생태환경관리 관련 사업소가 신설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4급 사업소장이 소속된 소속기관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과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사업소는 상호 연관성이 낮으면서도 각각이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4개의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자원순환정책', '생태환경', '기후변화대응', '산림조성', '공원관리' 등의 기능은 각기 일부의 관련성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수행되어야 할 본연의 기능이며, 대다수의 시·군·구는 해당 기능을 정책기능으로서 본청 부서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일부 집행기능이 있거나 일부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는 필요가 있더라도, 해당 기능만을 사업소로 설치하여 별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자원과', '수계관리팀', '휴양림팀' 등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5·6급 사업소로 설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브랜드 구축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생태·녹지 관련 기능까지 통합하여 상위에 4급 기구를 별도 설치하고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체계, 통솔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결 론]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분석 결과, 순천시의 4급 사업소 설치·운영 실태와 이에 관한 전라남도의 승인사항 검토 결과가 법령상 사업소 설치 요건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생태환경센터(4급)는 정책기능을 본청으로 분리·이관하여 해당 사업소를 폐지하고, 일부 현장성이 높은 집행기능(시설물 관리 등)을 수행하는 5·6급 사업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법령상 사업소 설치·운영 규정 준수와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관리의 건전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순천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순천시장께서는

법령상 사업소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사업소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부적정(4급 기구)

기 관 명 전라남도, 광양시

내 용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는 구체적 요건으로서 ①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②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광양시의 '교육보육센터'와 '산단복지센터'는 법령상 설치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업소 설치 부적정 내역 >

지자체명	기구명	부서명	정원	비고
전남 광양	교육보육센터 (4급)	소계	78	
		교육보육과(5급)		
		아동친화도시과(5급)		
		여성가족과(5급)		
		도서관운영과(5급)		
	산단복지센터 (4급)	소계	61	
		택지과(5급)		
		산단과(5급)		
		공원과(5급)		
		복지과(5급)		
		시설관리과(5급)		

(1) 교육보육센터

광양시는 인구유출 문제 등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자 보육, 교육, 아동, 도서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교육보육센터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각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교육·보육 등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 발생을 꾀하는 것은 일견 타당한 점도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청의 기구를 폐지하고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교육보육과의 경우 본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던 부서를 폐지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사업소에 설치한 것으로, 명백히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등의 경우에도, '관내대학 정상화 업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학교폭력 예방',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 '성별영향평가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과 같은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산단복지센터

산단복지센터에는 5개 과(課)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부서가 하나의 사업소 내 설치되어 통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업무특성상 연계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택지과, 산단 관리 및 개발·실시계획 인허가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산단과, 공원 조성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원과, 녹지·도시정원·가로수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녹지과, 커뮤니티센터·전망대·가로등 등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시설관리과의 기능은 일부 지역 또는 사업에서 관련성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각 부서가 별도로 추진하여야 하는 부분도 혼재되어 있다. 별도의 기관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성 높은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소의 설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산단이나 특정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소가 아닌, 시 전반의 산단·택지·녹지 등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로서 설치된 산단복지센터는 사업소의 수행기능을 넘어선 것이다.

또한, 현재 산단복지센터 등 각 사업소 부서의 사무실 위치가 운영 여건상 어려움으로 인해 분산되어 있어, 업무 현장성을 담보하기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센터장이 각 부서의 업무를 이해·관장하고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사업소장(4급) 직급 협의 요청시 이러한 사업소 설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분석 결과, 광양시의 4급 사업소장 설치·운영 실태와 이에 관한 전라남도의 승인사항 검토 결과가 법령상 사업소 설치 요건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교육보육센터(4급)는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해당 사업소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산단복지센터(4급)는 정책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현장성 및 집행성이 높은 기능을 분리하여 수행하는 5·6급 사업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법령상 사업소 설치·운영 규정 준수와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관리의 건전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광양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광양시장께서는

법령상 사업소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사업소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사업소 설치·운영 부적정(5급 기구)

기 관 명 나주시,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에 사업소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구 정원 규정 제6조 제4항에는 보조기관의 최소 단위로서 과(課)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라고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붙임표와 같이 나주시, 진도군, 신안군의 경우 사업소의 업무량 및 통솔범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본청 팀장급(6급)이 관장하는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정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본청 과장급(5급) 사업소를 운영하거나, 사업소 설립요건(현장성, 집행기능, 별도의 기관 등)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운영하고 있어 기능이관 등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사업소장의 직급을 사업소 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하고 법령상 사업소 설립요건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사업소 설치·운영 부적정 사례 >

시·군	사업소명 (설치일)	정원/ 현원	주요 기능	사업소 요건 미흡 사항 (관련 규정)
나주	대외협력사무소 (5급) (‘19.7.9.)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및 중앙부처 업무협조 • 국비 예산확보 활동 지원 • 정책동향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정원 5명) 등 5급 규모에 부적합(기구정원규정 제6조)
진도	그린에너지 사업단 (5급) (‘21.1.1.)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풍력·그린에너지 정책 추진 •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 해상풍력 허브항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정원 7명) 등 5급 규모에 부적합(기구정원규정 제6조) • 사업소가 본청 내 소재
신안	대광개발사업소 (5급) (‘96.1.4.)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수련원 관리·운영 • 대광해수욕장 홍보·관광객 유치 • 톨립축제 기획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정원 7명) 등 5급 규모에 부적합(기구정원규정 제6조)
	홍도관리사무소 (5급) (‘80.7.9.)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유지 • 홍도지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관광객 상담·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정원 7명) 등 5급 규모에 부적합(기구정원규정 제6조)
	가거도관리 사무소 (5급) (‘18.8.16.)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거도 내 민원업무 • 관광객 상담·안내 • 가거도 지역 폐기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정원 5명) 등 5급 규모에 부적합(기구정원규정 제6조)
	흑산공항지원단 (5급) (‘18.8.16.)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산공항개발지원 업무 • 공항 역세권 개발 및 관광 인프라 구축 • 흑산공항 보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정원 5명) 등 5급 규모에 부적합(기구정원규정 제6조) • 정책기획기능 등 사업소 성격 불부합(자치법시행령 제77조) • 사업소가 본청 내 소재
	도시개발사업소 (5급) (‘19.12.31.)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해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 기업 및 투자유치 등 개발 사업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정원 7명) 등 5급 규모에 부적합(기구정원규정 제6조) • 정책기획기능 등 사업소 성격 불부합(자치법시행령 제77조) • 사업소가 본청 내 소재
	병풍도 관리사무소 (5급) (‘21.3.18.)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상담·안내 • 병풍도 지역 폐기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량(정원 6명) 등 5급 규모에 부적합(기구정원규정 제6조)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고, 동 규정 별표2의3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과장·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두되, 시나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소장은 4급, 과장·담당관은 5급,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5급)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그러나 전라남도 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구 및 정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신안군의 경우 제16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농촌진흥기구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서(공원녹지과, 뮤지엄파크지원과)를 설치하는 등 상기 법령을 위반하였다.

2) 또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신안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정 관련 부서 통폐합시 '해당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만 복수직렬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무관한 과에 대하여 일반직·지도직 복수직렬을 책정하고 있으며, 보성군, 함평군, 영광군의 경우 본청 농정부서와 통합하지 않았음에도 하부 과장직위에 일반직·지도직 복수직렬을 책정하는 등 부적정 운영하였다.

3) 그리고 광양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의 경우 과장이 될 수 없는 농업연구관을 과장 직위에 정원 책정하여 상기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법령에 부합하도록 직급 재책정 등 개선이 요구된다.

4) 아울러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의 경우 본청 농정부서와 통합과 관계 없이 농업기술센터 과장직위 정원에는 농촌지도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일부 이를 누락하였기에 상기 법령을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 불입)

조치할 사항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신안군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사무 및 과장의 정원이 법령에 맞게 책정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 사례 >

명칭 (설치일)	소장·부서장 직급·직렬			개편방향	비고
	직위	정원	현원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57.6.1.)	센터장	행정4·기술4·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07.5월 기구개편으로 본청 농업축산과와 통합
	농업정책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		
	농촌진흥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미래농업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99.2.12.)	특산품육성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행정5		'18.12월 기구개편으로 본청 친환경농축산과, 경제진흥과와 통합
	센터장	행정4·기술4·농촌지도관	행정4		
	농업정책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		
	친환경농업과장	행정5·농업5·녹지5·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농식품유통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		
동물자원과장	행정5·농업5·수의5	행정5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기술보급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95.1.1.)	센터장	행정4·기술4·농촌지도관	서기관		'04.1월 기구개편으로 본청 농산과, 식산과와 통합
	농업정책과장	행정5·농업5	농업5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배원예유통과장	행정5·농업5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먹거리계획과장	행정5·농업5	행정6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축산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		
	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양호)	
	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양호)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98.10.12.)	센터장	행정4·기술4·농촌지도관	기술4		'99.7월 기구개편으로 본청 농업부서와 통합
	농업지원과장	행정5·농업5	행정5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농산물마케팅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행정5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 부적정 → 연구관 삭제	
	매실원예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		
	산림소득과장	행정5·농업5·녹지5	행정5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기술보급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농업5	①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② 농업연구관 삭제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98.9.2.)	센터장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농촌연구관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 부적정 → 지도관 단수	본청 농정부서와 미통합
	미래농업연구과장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 부적정 → 지도관 단수	
	경영지원과장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 부적정 → 지도관 단수	

명칭 (설치일)	소장·부서장 직급·직렬			개편방향	비고
	직위	정원	현원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99.1.11.)	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본청 농정부서와 미통합
	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관·농업5	농업5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62.4.1.)	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본청 농정부서와 미통합
	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 부적정 → 지도관 단수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57.3.11.)	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본청 농정부서와 미통합
	농업기술담당관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 부적정 → 지도관 단수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62.3.21.)	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본청 농정부서와 미통합
	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연구개발과장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 부적정 → 지도관 단수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69.1.1.)	센터장	농촌지도관	행정5		'03.9월 기구개편으로 본청 농정과와 통합
	농정과장	행정5·농업5	농업5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농촌지원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친환경농업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		
	축산과장	행정5·농업5·수의5	행정5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98.8.25.)	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본청 농정부서와 미통합
	기술보급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영농지원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67.7.1.)	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업5		본청 농정부서와 미통합
	농업개발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행정5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기술보급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69.1.1.)	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19.12월 기구개편으로 본청 친환경농업과와 통합
	농촌진흥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기술보급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친환경농업과장	행정5·농업5·수의5· 농촌지도관	농업6		
	농업기계획과장	행정5·농업5·시설5· 농촌지도관	행정5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공원녹지과장	행정5·녹지5·수산5·시설5	행정5	농업행정과 무관한 부서 → 본청 이관	
	유지업파크 지원과장	행정5·농업5·녹지5·시설5	행정5	농업행정과 무관한 부서 → 본청 이관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장기간 비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 제14조, 별표2 및 별표3에 의하면 시·도 소속 3급 공무원은 실·국·본부장(시·군·구의 경우 4급)에, 4급 공무원은 담당관·과장(시·군·구의 경우 5급)에 상당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정원에 부합하도록 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5급 이하는 시·도에서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 목포시,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의 경우 기관 내 중요 보직을 수행하여야 할 간부급 공무원을 장기간 별도정원(결원보충) 승인 없이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파견하였고, 이에 따른 결원 직위는 차하급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직무대리 제도는 상위직위의 직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식 직위의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사상 임용행위와는 달라 전보 또는 승진임용으로의 운영이 제한되는 데도 상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하급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과장 직위에 승진 개념으로 인사발령 및 직무를 수행케 하는 등 부적정 인력 운영을 장기간 지속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하급자의 정원을 이용해 간부급 직위를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상화 계획 마련 등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 (위반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장흥군수, 진도군수,新安군수께서는

간부급 공무원을 장기간 비별도 파견 후 결원 직위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대리 운영을 지양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장기간 비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부적정 >

지자체	비별도 파견 현황			직무대리자 직급
	직급	파견기관(직위)	파견기간	
전남	4급	국제농업박람회(사무국장)	'16.8.2.~'22.1.12.	5급
	(2명)	F1대회조직위(부장)	'16.1.12.~'22.1.12.	5급
	5급 (11명)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 지역협력관)	'15.1.13.~'22.1.31.	6급
		한국농어촌공사 (어촌개발 지역협력관)	'19.8.21.~'21.7.31.	6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협력관)	'15.1.13.~'22.1.31.	6급
		전남개발공사 (본부장, 사업단장, 협력관)	'11.1.17.~'22.1.12.	6급
		전남테크노파크(실장)	'11.1.17.~'22.1.12.	6급
		전남생물산업진흥원(실장)	'14.1.13.~'22.1.31.	6급
		전남환경산업진흥원(사무국장)	'13.1.14.~'21.8.13.	6급
		한국학호남진흥원(사무국장)	'19.7.22.~'21.6.30.	6급
		전남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18.1.22.~'21.7.31.	6급
		국회사무처(지역협력관)	'18.7.21.~'21.7.9.	6급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사무국장)	'20.1.9.~'22.1.12.	6급
목포	5급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20.7.1.~'22.1.5.	6급
장흥	5급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원장)	'17.7.1.~'18.6.30. '19.7.1.~'19.12.31. '21.1.1.~'21.6.30.	6급
진도	5급	전남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 (협력관)	'21.1.11.~'21.12.31.	6급
신안	5급	신안문화원(협력관)	'19.4.26.~'21.12.31.	6급
	(3명)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협력관)	'11.12.22.~'21.6.31.	6급
		(재)신안군복지재단(요양원장)	'18.8.21.~'21.12.31.	6급

※ 실무인력(주무관급 : 시·도 6급 이하, 시·군·구 7급 이하) 제외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직급기준에 맞지 않는 읍·면장 정원책정

기관명 담양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 제1호에 규정(인구규모에 따라 최소 1개~최대 9개 설치 가능)되어 있고, 인구 10만 미만 시·군이 본청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장(과장급)·과장·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양군의 경우 설치 가능한 실·국(4급) 수는 1~3개이나 감사일 현재 두 개의 국(자치혁신국, 지속가능전략국)을 운용함에 따라 1개의 과장급(5급) 직위를 4·5급 복수로 책정 가능하나, 담양읍장 직위를 4급 단수로 책정하는 등 정원책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

< 직급 기준에 맞지 않는 정원책정 사례 >

지자체명	직위	직급 기준	현재 정원	비고
담양군	담양읍장	5급 (단, 실·국수 1개 이상 감축 운영 시 4·5급 책정 가능)	4급	

조치할 사항

담양군수께서는

기구정원 규정에 부합토록 과장급 직위에 대하여 정원책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간부급(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서는 정원에 부합하게 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전라남도 및 산하 시·군의 5급 이상 직급별 정·현원을 확인한 결과, 상기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는바, 해당 기관에서는 기능에 부합토록 정원을 재책정하거나 정원에 부합토록 현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순천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화순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
군수께서는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직위에 대하여 정원 재책정 또는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 배치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사례 >

지자체명	직위	정원	현원	비고
전라남도	교육운영과장	행정4급	기술4급	
목포시	연동장	행정5급	건축5급	
	원산동장	행정5급	복지6급	
	동명동장	행정5급	시설5급	
	유달동장	행정·농업·해양수산5급	복지5급	
	하당동장	행정5급	간호5급	
	신흥동장	행정·시설5급	복지6급	
	삼향동장	행정·농업·녹지5급	공업5급	
	보건소장	기술4급	행정5급	
	환경보호과장	행정·보건·환경5급	공업5급	
	자원순환과장	행정·환경·시설5급	공업5급	
	자동차등록사무소장	행정·공업5급	시설5급	
순천시	서면장	행정·복지·녹지·보건5급	시설5급	
	덕연동장	행정·복지·보건·시설5급	의료기술5급	
광양시	옥룡면장	행정·복지·농업·녹지5급	방송통신5급	
	옥곡면장	행정·복지·농업·시설5급	보건5급	
	다압면장	행정·복지·농업·녹지5급	공업5급	
	보건소장	기술4급	행정4급	
	공원과장	행정·녹지·시설5급	농업5급	
	녹지과장	행정·녹지5급	농업5급	
담양군	수북면장	행정·복지·농업·보건5급	시설5급	
곡성군	오곡면장	행정·복지·녹지·환경5급	농업5급	
	민원실장	행정·기술4급, 행정·시설5급	공업5급	
	의회사무과장	행정5급	수의5급	
화순군	도곡면장	행정·공업·농업·시설5급	간호5급	
	전문위원	행정·농업·시설5급	복지5급	
강진군	마량면장	행정·해양수산·시설5급	복지5급	
	병영면장	행정·환경·시설5급	농업5급	
해남군	복일면장	행정·복지·공업·시설5급	농업5급	
	스포츠사업단장	행정·시설5급	농업5급	
영암군	서호면장	행정·복지·농업·시설5급	녹지5급	
함평군	엄다면장	행정·사회복지·농업5급	시설5급	
	축수산과장	행정·농업·수의·해양수산5급	시설5급	
영광군	홍농읍장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5급	복지5급	
	군남면장	행정·농업·보건·시설5급	복지5급	
	염산면장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5급	공업5급	
완도군	보길면장	행정·복지·해양수산·환경5급	보건5급	
진도군	세무회계과장	행정·시설5급	해양수산5급	
	의회사무과장	행정·농업·시설5급	해양수산5급	
	경영지원과장	농촌지도관	농업5급	
	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공업·시설5급	환경5급	
신안군	세계유산과장	행정·해양수산·환경·시설5급	사서5급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농촌지도직공무원 정·현원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영광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진흥법」 제32조에 의하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두는 지도직공무원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농촌지도·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 외의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 여수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지도관, 지도사)을 읍·면·동장, 과장급 직위 등에 정원을 책정하거나 현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농촌지도직공무원 정·현원 운영 부적정 사례 >

지자체명	직위	읍면동장 직급		비고
		정원	현원	
목포시	공원녹지과장	행정·녹지·시설5급, <u>농촌지도관</u>	행정5급	
여수시	소라면장	행정·복지·농업5급, <u>농촌지도관</u>	행정5급	
	소라면 산업팀장	행정·농업·녹지6급, <u>농촌지도사</u>	<u>농촌지도사</u>	
	울촌면장	행정·농업·환경5급, <u>농촌지도관</u>	전산6급	
	울촌면 산업팀장	행정·농업6급, <u>농촌지도사</u>	<u>농촌지도사</u>	
	화양면장	행정·농업·녹지5급, <u>농촌지도관</u>	행정5급	
순천시	음식관광팀장	행정·보건6급, <u>농촌지도사</u>	<u>농촌지도사</u>	
	승주읍 산업팀장	행정·농업7급, <u>농촌지도사</u>	<u>농촌지도사</u>	
	낙안면 산업팀장	행정·농업6급, <u>농촌지도사</u>	<u>농촌지도사</u>	
	황전면 산업팀장	행정·농업6급, <u>농촌지도사</u>	<u>농촌지도사</u>	
	서면 산업팀장	행정·농업6급, <u>농촌지도사</u>	<u>농촌지도사</u>	
영광군	농정과장	농업5급, <u>농촌지도관</u>	농업 5급	
	유통축산과장	행정·농업5급, <u>농촌지도관</u>	행정 5급	
	모량면장	행정·농업·녹지·시설5급	<u>농촌지도관</u>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영광군수께서는

농촌지도직공무원과 관련한 정원 책정 및 현원 배치 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직공무원의 복무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국가정책 소요인력 기준인건비 반영분 미증원

기 관 명 순천시, 고흥군, 장성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17년 하반기부터 현장서비스 확충 로드맵에 따라 현장 인력 중심의 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도별 기준인건비 산정시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적시성 있는 대처를 위해 인력증원분(국가정책수요)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인력증원은 국가현안의 효과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인력을 적극적으로 증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17년 하반기 ~ '20년간 국가정책 수요에 대한 전라남도 및 시·군의 증원내역을 점검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해당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

< 국가정책 수요인력 미증원 현황 >

지자체명	연도	분야	증원목표 인력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미증원 인력
순천시	2018 수시배정	재생에너지	2	2
	2020 기준인력	공무직	3	2
고흥군	2018 수시배정	재생에너지	3	1
	2020 기준인력	주민참여예산	1	1
장성군	2020 기준인력	감염병	1	1
		자살예방	1	1
		주민참여예산	1	1
		공무직	1	1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 고흥군수, 장성군수께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정책 소요인력의 기준인건비 반영분에 대하여 적정인력 증원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22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국가정책 소요인력의 기준인건비 반영분에 대한 미증원 인력에 상응하는 기준인건비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행안부 자체 개선조치)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인력 업무분장 부적정

기 관 명 목포시,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담당 인력을 2018년도~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산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2017.12.29., 2018.12.20., 2019.10.02.)하였고, 이와 관련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계획과 세부추진요령, 매뉴얼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2018.05.04., 2019.04.29., 2020.03.04.)한 바 있다.

동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인력을 배정 취지에 맞게 정원조례에 반영하고 업무분장하여야 하나,

전라남도 산하 일부 시·군의 경우, 확충인력 중 일부는 임용 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확인되었다.(세부내용 : 붙임)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 장흥군수, 해남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께서는

기 배정된 인력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전라남도 산하 시·군의 주공사업 추진인력 업무분장 부적정 사례 >

지자체명	확충인력			배치당시 담당업무	비고
	정원조례 개정일	부서명	성명		
목포시	'17.10.12.	옥암동	임○○	·가족관계, 주민등록 업무, 인감	
	'17.10.12.	목원동	백○○	·제증명 업무,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업무	
	'17.10.12.	신흥동	이○○	·제증명, 가족관계 업무, 전자민원, 전입신고	
	'19.6.3.	신흥동	정○○	·주민등록, 제증명 업무, 가족관계 업무	
장흥군	'18.10.1.	장동면	박○○	·지방세 제증명 발급	
해남군	'20.11.16.	보건소	위○○	·치매상담 및 치매 안심마을 사업	
	'20.11.16.	보건소	김○○	·금연사업, 심뇌혈관 예방관리	
	'20.11.16.	보건소	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0.11.16.	보건소	이○○	·감염병 관리, 수인성 집단 발생 대응	
함평군	'20.10.26.	신광면	김○○	·환경, 안전건설, 상하수도 업무	
	'20.10.26.	엄다면	이○○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업무	
영광군	'20.5.29.	사회복지과	김○○	·긴급지원업무	
	'20.5.29.	홍농읍	김○○	·산업개발팀 업무(친환경, 원예특작, 축산방역)	
	'20.5.29.	군남면	박○○	·지방세 관련 업무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 제 목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
- 기 관 명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효율화 및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 기능·인력 재배치 기준 >

- ① (기능) 지원기능,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으로 재배치
* 예시 : 도시개발·산단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 지역별 특화 역점과제·국제행사 등 지역현안 분야,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법령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분야
- ② (현장) 본청 또는 감독부서에서 **읍면동, 일선 서비스 현장**으로 재배치
- ③ (서비스 편차) 인력 부족으로 안전·복지 등 **행정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있는 **현업부서 또는 읍면동**으로 재배치
- ④ (근로시간) 공직내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적정 배치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의 1% 이상을 재배치 대상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재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속해서 2년 이상 목표치 미만 실적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여수시장, 나주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 분야의 인력을 일선 현장 및 신규 핵심사업 분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

< 기능·인력 재배치 미흡 사례 >

연번	지자체명	재배치 달성률(%)			비고
		'17년	'18년	'19년	
1	여주시	1.40	-	-	2년이상 목표치 미만
2	나주시	-	-	-	"
3	담양군	-	-	-	"
4	곡성군	-	-	-	"
5	구례군	-	-	-	"
6	고흥군	1.40	-	-	"
7	보성군	-	-	-	"
8	화순군	-	-	-	"
9	장흥군	-	-	-	"
10	강진군	-	-	-	"
11	해남군	1.10	-	-	"
12	영암군	-	-	-	"
13	무안군	2.30	-	-	"
14	함평군	-	-	-	"
15	영광군	-	-	-	"
16	장성군	-	-	-	"
17	완도군	-	-	-	"
18	진도군	-	-	-	"
19	신안군	-	-	-	"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월)」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6~’20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세부 정비방안으로는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 후 실효성·안전 특성 등에 따라 위원회 폐지, 협의체 전환 등을 실시(조례 등 근거규정 개정·폐지 포함)할 것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 사실상 비상설 운영하는 경우(위원 미구성 포함)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비상설 운영 명시 필요
※ 조문(예시) : ㉔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해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기와 같이 정비하여야 하나, 일부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상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

지자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임의)	조례 등	
전라남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자문위원회	○		12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심의위원회 및 시장 분쟁조정 위원회	○		13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	14
	도로노선조정위원회		○	40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		19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	15
	지하수관리위원회	○		14
목포시	면책심의위원회		○	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5
	설계자문위원회	○		100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	10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11
	조각작품 심의위원회		○	0
	관광진흥위원회		○	21
	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		○	7
	교통대책 위원회		○	9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	11
	제안심사위원회		○	11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		10
	규제개혁위원회		○	26
	경로당운영위원회		○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	12
	시사편찬위원회		○	0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		○	12
	의료관광자문위원회		○	12
	헌혈추진위원회	○		10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0
	정책자문위원회		○	39
	목포자연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	1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11
	시민소통위원회		○	33
	장의심의위원회 장의위원회		○	0
	소비자 정책위원회		○	0
	투자유치위원회		○	0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	15
	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		○	16

여수시	면책심의위원회		○	7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	16
	지역경제협의회		○	19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1
	에너지위원회		○	12
	기업지원대책위원회		○	10
	공유촉진위원회		○	11
	여수시무장애도시실무위원회		○	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	5
	마리나자문위원회		○	14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	10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	20
	택시자문위원회		○	13
순천시	헬스투어협의회		○	10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	19
	안전관리자문단	○		18
	한옥위원회		○	7
	상권활성화협의회	○		13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	9
	향토유적위원회		○	11
나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20
	역사적인물선양사업위원회		○	0
	천연염색공방운영위원회		○	9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	15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19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0
광양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	14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	12
	어르신행복도시자문위원회		○	9
	체육진흥협의회	○		9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1
	CCTV운영협의회	○		13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	16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20
	공중목욕장운영위원회		○	9
	식생활교육위원회	○		18
	물재이용관리위원회		○	13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	○		9
	교통안전정책심의회		○	9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0
곡성군	군정평가위원회	○		8

곡성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	10	
	정보공개심의회	○		7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4	
	체육진흥협의위원회		○	14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		18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13	
구례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	9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		○	9	
	구례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	6	
	공간정보위원회		○	8	
	청년정책위원회		○	12	
	인구정책위원회		○	15	
	친환경농업육성발전위원회		○	15	
	산수유 보호·육성 관리위원회		○	13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	12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	12	
	기록물평가심의회	○		0	
	보안심사위원회	○		23	
	농업발전을위한민관협의회		○	23	
	유자육성위원회		○	15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9	
	투자유치심의위원회	○		1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15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5	
	부실공사방지위원회		○	7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	8	
	보성군	감사위원회		○	7
		금고지정심의위원회		○	9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7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5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4	
전남환경성질환에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	8	
건설사업종합기획단			○	16	
화순군		화순군남북교류 협력추진위원회		○	15
	읍면지편찬위원회		○	16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2	
	친환경도시농업위원회		○	8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	0	
장흥군	기록물평가심의회		○	6	
	정보화위원회		○	15	
	교육환경개선위원회		○	1	
	공간정보심의위원회		○	8	

장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5
	계약심의위원회		○	11
	천관문서관운영위원회		○	7
	자원봉사발전위원회		○	15
	노인복지관운영위원회		○	9
	노인일자리위원회		○	3
	물가대책위원회		○	16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	○		14
	환경위원회		○	10
	장흥한우육성위원회		○	10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9
	노사민정위원회	○		15
	화물공영차고지운영위원회		○	7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13
	평생학습추진위원회		○	9
해남군	관광진흥협의회		○	11
	청년정책위원회		○	16
	양성평등위원회	○		12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	6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	10
	정보화위원회		○	7
	노사민정협의회	○		15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		○	9
	월출산로프웨이설치추진위원회		○	30
	교통안전대책위원회	○		1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	13
	향토문화유산위원회		○	30
	체육진흥협의회		○	15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2
	지방청소년위원회		○	14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	7
	안전관리실무위원회		○	15
	지적재조사위원회	○		3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	14
	한옥위원회		○	9
	후생복지운영협의회		○	13
	무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1
투자유치위원회		○		7
노사민정협의회		○		10
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		12
재해지도 작성 자문위원회			○	9

무안군	조생양파최저생산비지원운영위원회		○	15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3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0
	함평천지한우육성위원회		○	10
	교육환경발전위원회		○	11
	노사민정협의회	○		13
	군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	10
	물가대책심의회	○		0
영광군	적극행정면책위원회		○	5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	9
	기록물평가심의회	○		5
	명문교육성위원회		○	0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9
	노사민정위원회	○		12
	소상공인지원위원회		○	10
	여성농어업인정책심의위원회		○	9
	환경위원회		○	13
장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16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	12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4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8
	경관위원회	○		20
	청소년위원회		○	12
	노사민정협의회	○		13
	필암서원유물전시관운영위원회		○	10
완도군	인구정책위원회		○	20
	한옥위원회		○	7
	체육진흥협의회	○		13
	쇼핑몰위원회		○	7
진도군	진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10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0
	공동위원회	○		17
	노사민정협의회		○	15
	물가대책위원회		○	15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	8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	6
신안군	체납정리위원회		○	0
	보안심사위원회		○	5
	자체평가위원회	○		10
	규제개혁위원회		○	12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15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4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기 관 명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용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동 규정 제4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제출 대상·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9~20년)을 통해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매년 12월)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조직 운영토록 안내한 바 있다.

❖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기구정원 규정」 제40조 및 '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편집)

-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전라남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등이 상기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였다.(위반사항 : 붙임)

이에 전라남도 산하 시·군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보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내실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